

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

◎ 사업개요: 4월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규모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 고용·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

1. 무급휴직 근로자

지원금액	-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일 2.5만원, 월 최대 50만원 (한 달 최대 20일 까지 지원) ※부산, 인천의 경우 지원기간 1개월
지원대상	- 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: 10인 미만 => 최대 9인 까지 지원 - 그 외 업종: 5인 미만 => 최대 4인 까지 지원 ①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장에서 위기경보 수준 “심각”단계 발령(20.2.23)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을 실시한 근로자(*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 설정하여 저 소득자 우선지원) ②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 ③ 인천-수상·항공운송 관련업종 제주-여행업·관광숙박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지원
지원기간	- 20.2.23이후 ~ 예산 소진시 까지(2개월간 최대 40일 지원) - 5월 1차 접수일(5/1~5/10), 2차(5/18~5/22) -->소급적용 가능
지원신청 절차 (공통)	①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[지원신청서](양식) ②무급휴직 확인서 ③개인정보처리 동의서(양식) ④사업자등록증 ⑤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⑥가족관계증명서(사업주 or 근로자) ⑦개인통장 사본(근로자) ⑧소상공인확인서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세무서 발급) ▼ - 사업장 관할구청 접수처(일자리플러스센터)방문 or 관할구청 홈페이지 신청 or 사업장 관할 구청 FAX ▼ - 자치단체에서 요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(*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 가능)
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

지원금액	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 * 서울, 부산, 인천, 제주는 1개월
지원대상	① 코로나19로 위기경보 수준 “심각”단계 발령(20.2.23)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%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(*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) ② 코로나19로 인하여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
지원절차	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② 노무 미제공 or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▼ - 관할 자치단체 제출 ▼ - 자치단체에서 요건 심사 후 특수형태근로자·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